공고 제 48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12월 03일

홍은제2동장 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 *진	김 *진 2000-11-04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(홍은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11-22
지 *일	지 *일 1971-12-05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(홍은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11-22
이 *현	이 *현 1986-08-24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(홍은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11-22